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97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19년 5월 24일
다. 회부일 : 2019년 5월 30일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의 법령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2조제3항제4호)
- 2)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안 제2조제1항)
- 3)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의 적용대상 범위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 4)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기본공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되, 징수포상금 증가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조).
- 5)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 6)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회계법」 등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반영)
<p>- 안 제5조제4항에서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소송승소의 경우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중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p>	<p>- 안 제5조제4항에서 소송승소에 관한 포상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것으로 권고사항 반영</p>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라. 입법예고(2019. 3. 21. ~ 4. 10.)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요건 및 포상금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전담하는 결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폐지하되 지급률을 하향하여 현지급 수준을 유지하고, 소 제기 승소에 따른 체납액 징수시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직전년도에 발생한 지난년도 세입에 대하여 부과월로부터 2개월 경과시 징수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의 경과 요건 및 대상 세목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 징수액에서 공제

- 재무국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결손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지급 요건 및 대상을 완화·확대하여 사기 진작을 통한 세입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

순 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①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조례 제2조제1항3호)	매년 1~2월 징수 직전년도 체납액 <u>포상금 지급 제외</u>	매년 1~2월 징수 직전년도 체납액(부과월로부터 2개월 경과분) <u>포상금 지급 포함</u>	추가예산 1억원
②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안 제3조제5호)	납세의무성립일 <u>2년</u> 경과 <u>취득세만</u> 포상금 지급	납세의무성립일 <u>1년</u> 경과 <u>신고납부세원</u> 포상금 지급	추가예산 1억원

순 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③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기본공제 폐지 및 지급률 하향 조정 (안 제4조)	기본공제 후 포상금 지급 잔여 소멸시효에 따라 3~7% 지급율	기본공제 폐지 <u>4.3%</u> <u>단일지급률 적용</u>	
④	소송제기에 따른 승소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안 제5조 제4항)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에 대하여만 지급한도 확대	소송제기에 따른 승소시에도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 세금포탈 · 은닉재산 시민신고 조문정리	〈신 설〉 〈신설 및 조항변경〉	단순압류 징수 포상금 제외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⑥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	연임금지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규정 없음	1회 한 연임가능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호선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노력의 정도를 반영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유인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체납세입 징수라는 고유업무에 대한 포상금 규모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상위법령 반영 체계 정비 및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현 조례 체계를 「지방세기본법」¹⁾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관계 법령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며,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출납폐쇄 기한을 2015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납폐쇄 후 징수된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19.1월~2월 징수시)	개 정 안 ('19.1월~2월 징수시)
'18.1월~10월 부과분	포상금 제외	포상금 포함

- ※ 다만, 부과월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독촉기간이 남아 있는 체납액 (직전년도 11월부터 12월 부과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 규정은 2016.5.29.부터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규정

〈 출납폐쇄기한 변경 관련 법률 개정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8조(출납폐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현행 - 「지방회계법」[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제정, 공포]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2015년에 개정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 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 출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내 조례 개정이유(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11호, 2015. 10. 8., 일부개정)

- 당시와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다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분류하려는 재무국의 모순된 입장변화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타시도에서는 지난년도 체납세액이 전부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제시하면서, 지난년도 세입의 조기징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지급예산 증가분 분석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2월 징수분		'17년 1~2월 징수분		'18년 1~2월 징수분		3년 평균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계	11,945	110	10,545	97	10,918	100	11,136	102
시	1,504	14	2,628	24	2,547	23	2,226	20
자치구	10,440	96	7,917	73	8,371	77	8,910	82

※ 조례개정시 포상금 102백만원(시 20백만원, 구 82백만원) 증가(3년 평균)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p>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p> <p>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p>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월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u>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u>2.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u>4.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u>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u>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u>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u>	<u>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u>
<u>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u>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② <u>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	② <u>제1항제3호</u> ----- ----- <u>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	<u><삭 제></u>
<u>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	<u>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 <u><삭 제></u>
<u>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u>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현 행	개 정 안
<u>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u>	
<u>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제3호</u> -----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 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u> <u>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u> ----- ----. -----. -----.
<u>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u>	<u><삭 제></u>

2) 탈루 세원 발굴포상금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제5호)

- 안 제3조는 현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취득세에서 1년이상 경과한 모든 신고납부 세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 조례개정시 포상금 연 98백만원(시 2천8백만원, 구 7천만원) 증가(4년 평균) 예상
- ※ 16개시도 중 15개 시도는 1년이상, 9개 시도는 신고납부세원을 지급대상으로 함
- ※ 서울특별시세 신고납부 세원: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범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자동차세(주행분, 연납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시	자치구
2017	68,393	8,543	59,850
2018	99,360	35,641	63,719
2019.10.	96,726	34,976	61,750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u>2년</u> 이상 경과한 탈루된 <u>취득</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 <u>1년</u> ----- ----- <u>신고납부</u> -----
6. <u>제2조제1항제6호</u>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6. <u>제2조제1항제7호</u> ----- -----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u>포탈공제</u>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 <u>포탈·공제</u> ----- ----- ----- -----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 고 <u>위원회</u>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 -- <u>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

- 재무국은 세원 발굴 포상금 적용대상을 타시도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기 진작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나, 세무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포상금 확대 지급을 통해 세입증대를 유인하려는 것이 적절한 세입증대 대안 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타시도 포상금 제도 비교 분석표(숨은세원 발굴 관련) 〉

연번	시도별	지급기준	지급한도		적용기간 (경과연수)	대상세목
			지급률	금액(만원)		
1	서울 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u>2년 이상</u>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2년이상	취득세원
2	부산 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벼려지거나 숨은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시세
3	인천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분기 300	1년이상	시세
4	대구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시세
5	대전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2%	전당 30 월 70	1년이상	전세목
6	광주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시세
7	울산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2%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취득세원
8	세종 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분기 100	1년이상	취득세원
9	경 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제한 월 500	1년이상	전세목
10	강 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정수액의 5%	전당 50 월 200	1년이상	도세
11	충 북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정수액의 5%	전당 50 월 200	1년이상	도세
12	충 남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분기 100	1년이상	취득세원
13	전 북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도세
14	전 남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도세
15	경 북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취득세원
16	경 남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월 100	1년이상	도세
17	제 주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정수액의 5%	전당 30 분기 300	1년이상	전세목

- ※ 국세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 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률 조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전담하여 징수하고 있는 결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폐지하되 지급률을 하향하여 현지급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재무국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징수하는 결손된 시세 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기본경비)'을 공제한 '순징수액'에 대하여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기본공제액 연혁 〉

(단위: 명, 천원)

구분	1기('03.4.1~'04.3.31)	2기('04.4.2~'10.12.31)	3기('11.1.1~현재)
일인당 연간 공제액	151,286	56,800	141,000
기본징수경비	127,000	184,000 (당초 99,460)	244,000
기본징수액	932,000	100,000	600,000
직 원 수	7	5	6

- 정식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명목으로 징수액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따라, 기본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3%에서 7%의 징수포상금 차등 지급률을 현행 지급액 수준에 맞추어 역산하여 4.3%의 단일 지급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공제에 대한 언론 비판기사와 월포상금 불안정으로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한 지급기준 개선 통보(2017.12.26.)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액체납시 세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 체납시세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 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p> <p>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 0분의 6</p> <p>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 0분의 5</p> <p>4.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 0분의 4</p> <p>5.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4년 이상인 세 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3</p>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 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u></p>
<p><u>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u></p>	<삭제>

- 다만, 지난년도 시세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된 결손체납액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앞둔 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적 징수를 독려하고자 포상금을 차등 지급해온 현행 조례의 취지를 볼 때, 획일적인 단일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여부와,

- 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폐지분 만큼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포상금액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수공무원 평균보수 : 연 58백만원(급여 33백+포상금 25백) [최저 39백만원(급여 28백+포상금 11백) / 최고 79백만원(급여 34백+포상금 45백)]

〈 최근 5년간 포상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수액	지급액								
계	177,328	2,352	183,984	2,480	235,679	2,326	213,941	2,058	200,326	1,977
시	소계	38,681	431	46,891	488	37,675	394	40,497	412	39,367
	일반	34,818	270	42,191	277	34,219	278	36,589	246	35,526
	시간제	3,863	161	4,700	211	3,456	116	3,908	166	3,841
자치구	138,647	1,921	137,093	1,992	198,004	1,932	173,444	1,646	160,959	1,578

〈 38세금징수과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2019.6월 현재) 〉

□ 채용개요

- 채용취지 : 무재산 등 사유로 전액 결손된 체납징수만 전담하기 위하여 민간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추적 징수하도록 채용
- 최초 채용시기 : 2003.03.01.
- 채용기준 : 캐피탈·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경력이 있는 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

- 인원 : 6명(남자 4명, 여자 2명)
- 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 상당, 주 20시간 근무)
- 근무기간 : 5년(신규 2년, 연장 3년)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2019. 6월 현재) 〉			
성 명(성별)	연령	주요 경력	채용기간
최○○(남)	43	F&U신용정보 채권추심	'18.04.01. ~ '20.03.31.
은○○(여)	45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	'18.04.01. ~ '20.03.31.
최○○(남)	53	하나캐피탈 채권추심	'19.04.07. ~ '21.04.06.
양○○(남)	54	현대캐피탈 채권추심	'18.04.15. ~ '21.04.14.
이○○(남)	42	롯데카드 채권추심	'19.04.01. ~ '21.03.31.
이○○(여)	44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	'19.04.01. ~ '21.03.31.

-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결손시세 월별 징수액이 현행 기본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일률적인 징수포상금 지급률(4.3%)을 적용받게 되는바, 현행 기본공제액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미달하는 징수실적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차등 하향 적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소 제기 승소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안 제5조제4항)

-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특별한 징수활동으로 보아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는바, 소 제기를 통한 승소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제5조(지급한도) ① ----- ----- -----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p>

- 체납액 징수 방법에 있어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위장이혼 여부 현장 조사,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제기를 통한 징수는 통상의 징수 방법에 비해 특정 체납자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인 추적과 조사를 동반하는 징수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유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세입공정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등(안 제6조 및 안 제9조)

- 안 제6조는 조문 체계 정비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사항과, 현행 ‘2년’ 단임제로 되어있는 위원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인 ‘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 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u>위원 회</u>를 둔다.</p> <p>② · ③ (생 략)</p> <p>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없다.</u></p> <p><u><신 설></u></p> <p>⑤ ~ ⑦ (생 략)</p> <p>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u>제2조제1항제3호</u>의 경우 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 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8조(지급신청) ① <u>제3조</u> 및 제4조에 따른 포 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 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u>제2조제1항제3호</u>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 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 청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지급) ① · ② (생 략)</p> <p>③ 제8조제1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u>서울특</u> <u>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 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 선으로 정한다.</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 음)</p> <p>⑨ ----- ----- . ----- <u>제2조제1항제5호</u> ----- ----- -----.</p> <p>제8조(지급신청) ① <u>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 와 <u>제3조</u> ----- ----- ----- <u>제2조제1항제5호</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규정에도</u> ----- -----</p>

현 행	개 정 안
<p>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 ----- ----- -----. ④ -----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 ----- -----.

- 동 개정안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될 경우, 위원회의 안정적인 회의 운영 및 공적심의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행 조례 개정(2015.10월) 당시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2년)과 관련하여, 연임시 위원 임기가 최장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로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된바 있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연임 규정 필요 또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1.4. 시행)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 연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안 제9조제4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명령 종류에 관한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는 2016년 11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분법 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이관 규정된 사안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바,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안 시행 시기 관련(안 부칙 제1조)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된바, 개정조례안 시행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수정 대상 조문 〉

개정안	수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 체납시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개선 관련

- 재무국(38세금징수과)에서는 국장 방침*에 따라 일괄 재산조회 및 압류자료 생성 등 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접 징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간의 징수포상금 지급 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포상금 산정시 일정부분 징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과장이하 일반 직원에 대하여도 안분 지급하고 있음.

* '체납시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계획(38세금징수과-9179(2017.4.10.))

〈 방침 수립 전·후 포상금 비교표 〉

구 분	직원 현황	
	징수 직원	총괄 직원
개선 전 지급액	804,310	189,990
개선 후 지급액	738,000	388,160

- 다만, 기여도 측정 방식이나 안분 방법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적정성 검증을 위해 현행 방침에 의한 운영보다는 조례에 위임조항을 설치하고 규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의 등의 외부적 검증을 통한 객관성과 적정성을 갖추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서울특별시세 직접 부과·징수 필요성 검토

- 재무국에서는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로 인한 자치구의 시세 징수에 대한 처리비인 징수교부금과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및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지원사업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비와 재정보전금 등을 교부하고 있음.

- 첫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서울특별시세에 대한 처리비로 시세 납입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재무국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4,199억원 수준임.

< 최근 3년간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시세 징수교부금	346,794	346,794	0	377,990	377,990	0	419,907	419,907	0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 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생략)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한편, 2017년 1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로 현재의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하여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로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천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작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악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초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남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파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동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시세 위임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한 포상금규모는 2018년도 기준 16억 4천만원(체납징수 15억 7천 8백만원, 세원발굴 6천 4백만원) 수준임.

< 최근 5년간 자치구 포상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액	지급액								
계	138,626	1,921	119,163	1,958	198,004	1,932	173,444	1,646	160,959	1,578
종로구	4,466	53	4,252	55	4,519	47	4,522	49	3,379	41
중구	5,357	53	3,188	40	6,333	47	4,062	48	3,826	54
용산구	3,784	52	3,141	58	5,745	61	5,447	62	5,394	56
성동구	3,169	48	3,549	65	5,208	64	6,007	67	5,255	56
광진구	3,697	69	4,346	72	6,351	68	5,178	51	5,340	57
동대문구	3,526	58	2,874	53	8,064	62	5,700	65	4,405	48
중랑구	5,326	79	4,364	82	6,169	81	5,483	56	4,958	49
성북구	4,696	71	4,760	58	7,045	69	7,076	43	6,515	48
강북구	3,665	45	3,099	50	4,564	45	4,324	44	3,959	36
도봉구	3,232	45	3,138	50	5,658	46	4,206	39	4,275	38
노원구	4,621	71	4,883	74	7,350	63	7,481	73	6,841	60
은평구	4,671	78	4,282	86	7,087	99	6,239	65	6,415	68
서대문구	3,254	48	1,998	25	4,509	39	4,289	42	4,136	39
마포구	5,927	88	4,899	90	6,986	80	6,306	75	6,095	70
양천구	5,601	80	6,281	89	9,587	73	6,459	37	6,343	45
강서구	6,432	95	5,694	87	9,382	91	10,943	51	8,542	61
구로구	5,474	72	4,322	69	8,287	75	6,796	39	7,313	62
금천구	3,453	67	2,701	51	4,343	47	4,801	39	3,818	30
영등포구	4,843	65	4,849	73	7,484	70	7,176	66	6,444	66
동작구	4,156	53	3,300	47	6,082	55	5,858	73	5,219	52
관악구	5,111	78	4,379	85	6,879	73	6,534	68	6,491	64
서초구	11,639	135	8,114	149	15,369	152	11,085	124	10,329	107
강남구	16,648	193	14,232	227	25,151	212	18,908	184	17,000	183
송파구	10,064	143	7,886	150	12,973	166	12,128	123	12,026	120
강동구	5,814	82	4,632	73	6,879	47	6,436	63	6,641	70

〈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시	자치구
2017	68,393	8,543	59,850
2018	99,360	35,641	63,719
2019.10.	96,726	34,976	61,750

- 셋째, 재무국에서는 시세의 자치구 위임 징수에 따른 시세입 증대를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을 유인하고자 시세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시세 징수 실적 등을 지표로 하여 행정국 소관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하는 인센티브로서 자치구에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억원 및 포상금 1억원을 매년 교부하고 있음.

〈 재무국 2019년도 예산서 〉

부서·정책·단위·세부	2018	2019	증 감	예산과목 및 내 역	(단위 : 천원)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0		
				(100-308-05)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00,000
				○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비	5,000,000원 = 5,000,000

재무국

〈 2018년도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분야	
		재원조정비	포상금	재정보전금	시상금	재원조정비	포상금
합 계	5,100,000	2,400,000	80,000	1,000,000	10,000	1,600,000	10,000
종 로	198,860	95,000	3,110	35,000	350	65,000	400
중 구	158,600	75,000	2,800	80,000	800		
용 산	281,910	142,000	3,860	35,000	350	100,000	700
성 동	102,700		2,000			100,000	700
광 진	240,310	106,000	3,310	50,000	500	80,000	500
동 대 문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중 랑	259,410	95,000	3,110	80,000	800	80,000	500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분야	
		재원조정비	포상금	재정보전금	시상금	재원조정비	포상금
성 북	226,360	142,000	3,860			80,000	500
강 북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도 봉	279,510	95,000	3,110	80,000	800	100,000	600
노 원	2,000		2,000				
은 평	214,010	95,000	3,110	50,000	500	65,000	400
서 대 문	229,110	95,000	3,110	50,000	500	80,000	500
마 포	225,160	106,000	3,310	35,000	350	80,000	500
양 천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강 서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구 로	102,750		2,000	35,000	350	65,000	400
금 천	37,350		2,000	35,000	350		
영 등 포	256,560	122,000	3,560	50,000	500	80,000	500
동 작	327,260	142,000	3,860	80,000	800	100,000	600
관 악	276,660	122,000	3,560	50,000	500	100,000	600
서 초	125,560	122,000	3,560				
강 남	145,860	142,000	3,860				
송 파	292,060	142,000	3,860	80,000	800	65,000	400
강 동	245,260	106,000	3,310	35,000	350	100,000	600

○ 종합적으로, 시세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현 체계상 수임자인 자치구에 대한 업무 처리비와 시세 세원증대를 유인하기 위한 포상금 등으로 매년 4,266억원(2018년 기준)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임.

※ 재무국 소관 시세 위임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액 종류 및 금액(2018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징수교부금	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419,907	5,100	1,642

- 또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비례하여 교부액 또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전되는바, 자치구 위임 징수로 인한 수임자의 적극적 세입증대 유인책으로 매년 막대한 자원을 유출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주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시 세입 징수의 주체로서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징수교부금 대비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동남권역(강남, 서초, 송파구)에 시세징수사무소의 시범적 및 순차적 확대 등 서울시가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부과 당해연도 내에 적극적 징수를 위하여 부과 다음연도 2월까지 징수하는 체납액은 현행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 공동징수분 세입징수포상금 분배 방법 등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난년도 체납액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지난년도 체납액을 '부과월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에서 현행과 같이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신고납부 세원'에서 현행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으로 함(안 제3조 제5호).
-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 11조 신설).
- 본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제1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97
----------	-----------

제안연월일 : 2019년 11월 21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부과 당해연도 내에 적극적 징수를 위하여 부과 다음연도 2월까지 징수하는 체납액은 현행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 공동징수분 세입징수포상금 분배 방법 등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난년도 체납액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지난년도 체납액을 ‘부과월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에서 현행과 같이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신고납부 세원’에서 현행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으로 함(안 제3조제5호).
-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제 11조 신설).
- 본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부과월로부터”를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로 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취득”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지난년도 체납액(<u>부 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u>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 2. (생 략) 3. 지난년도 체납액(<u>부 과월로부터</u>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난년도 체납액(<u>부 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u>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 7.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u>2년</u> 이상 경과한 탈루된 <u>취득</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 8. (생 략)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u>1년</u> 이상 경과한 탈루된 <u>신고납부</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 8. (생 략)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개정안과 같음)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u>2년</u> 이상 경과한 탈루된 <u>취득</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 8. (개정안과 같음)
	〈신설〉	<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칙 (생 략)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부 과분부터, 제4조 및 제5 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 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조제1항제6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포탈공제”를 “포탈·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 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 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 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p> <p>2.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4.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p>	<p>제2조(지급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지방세를 탈루한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p> <p>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p> <p>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 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p> <p>4.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p>

현 행	개 정 안
<u>인</u>	<u>또는 민간인</u>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 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 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 이 인정되는 공무원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 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 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 이 인정되는 공무원
1. (생 략)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 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 ----- ----- <u>세입징수</u> <u>공적심사위원회</u> ----- ----- ---.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 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u></p> <p>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p> <p>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p> <p>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p> <p>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 <u><신 설></u></p> <p>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p>	<p>개정안</p> <p>③ 제1항제3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p> <p>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p>

현 행	개 정 안
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u>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u>	<삭 제>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u>제2조제1항제6호</u>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6. <u>제2조제1항제7호</u> ----- ----- ----- --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u>포탈공제</u> 또는 환급	7. ----- ----- <u>포탈·공제</u> -----

현 행	개 정 안
<p>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 ----- ----- ----- ----- ----- -----</p>
<p>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u>위원회</u>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p>	<p>8. ----- ----- <u>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p>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액체납시세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시세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u></p>
<p><u>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u></p>	
<p><u>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u></p>	
<p><u>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u></p>	

현 행	개 정 안
<p><u>순징수액의 100분의 5</u></p> <p><u>4.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u></p> <p><u>순징수액의 100분의 4</u></p> <p><u>5.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3</u></p> <p><u>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u></p> <p>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p> <p>1. · 2.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까지 지</u></p>	<p>제5조(지급한도) ① ----- ----- ----- ----- ----- -. <단서 삭제></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u></p>

현 행	개 정 안
<u>급할 수 있다.</u>	<u>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u> <u>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u> <u>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u> <u>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u> <u>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u> <u>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u> <u>다.</u>
<u>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u> <u>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u> <u>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u> <u>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u> <u>위원회를 둔다.</u>	<u>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u> ----- ----- ----- ----- <u>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u> <u>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u>② · ③ (생 략)</u> <u>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u> <u>임할 수 없다.</u>	<u>② · ③ (현행과 같음)</u> <u>④ -----</u> ----- <u>한</u> <u>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 ⑦ (생 략)</u> <u>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u> <u>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u>	<u>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u> <u>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u> <u>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u> <u>정한다.</u>
	<u>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u> <u>항까지와 같음)</u> <u>⑨ -----</u> -----.

현 행	개 정 안
<p>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p> <p>④ -----</p> <p>--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